의안 번호	84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10.29.)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10.29.

산업경제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 10. 15. 문순규 의원 등 11명

나. 회 부 일 자: 2026. 10.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10.29.)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자: 문순규 의원)

○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한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의2제1항)

나. 소상공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다. 소상공인 교육 이수자에 대한 지원사업 가점 부여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제1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2

나. 관계법령 저촉 여부: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

라. 입법예고(2026. 10. 15. ~ 10. 21.):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전현주)

가. 개정 주요내용

○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중 위임 규정 삭제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안 제1조 (목적)	현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6조)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과 위탁 근거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가점 부여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현행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생 략)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상담·자문·교육에 대한 사항 2. ~ 6. (생 략)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상담·자문**에 대한 사항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제6조의2(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1. 경영, 마케팅, 세무·회계, 노무·법률, 디지털 전환 등 역량 강화 교육** **2. 업종전환 및 사업 고도화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3(교육 이수자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 (안 제22조) 관련 조례의 불필요한 재기재 내용을 삭제함.

안 제22조 (수당 등)	현행 제2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나.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현행 조례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 중복·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분석한 결과, 2025년 전체 폐업 사업자는 97.6만 개, 폐업률은 8.64%이며,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폐업 사업자는 75.1만 개, 폐업률은 11.08%로 나타남. 이는 전체 폐업률보다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이 높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줌.

<연도별 폐업 사업자 수 및 폐업률>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전체	폐업사업자(만 개)	97.6	100.8	98.6
	폐업률(%)	**8.64**	9.04	9.02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	폐업사업자(만 개)	75.1	78.4	75.9
	폐업률(%)	**11.08**	11.73	11.63

※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중소벤처기업부 분석

○ 안 제1조는 본 조례가 자치조례로서 별도의 상위법 위임 규정이 필요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 안 제6조제1항은 제6조의2에 교육 지원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중복되는 ‘교육’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 및 제22조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안 제6조의2는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마케팅·세무·회계·노무·법률·디지털 전환 및 업종전환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의 다양한 경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교육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 안 제6조의3은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제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을 통해 습득한 경영 지식과 역량을 실제 사업 운영에 활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교육과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소비 형태의 변화, 디지털 기술 확산 등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이수와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역량 개발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6. 질의·답변요지: 기재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